**‘바람개비’ 동아리 회칙**

**제1장 총칙**

**1조 [명칭] 본 동아리는 숭실발명회 <<바람개비>>라 칭한다.**

**2조 [위치] 본 동아리는 숭실대학교 내에 둔다.**

**3조 [취지]**

**새 천년을 맞이한 오늘날은 최첨단의 기술시대이다.   
첨단기술은 지적소유권에 의해 보호되며, 지적소유권의 유무에 따라 선진국과 후진국이 평가되리만큼 중요하다. 이에 우리 대학인은 첨단기술의 바탕이 되는 기존기술을 습득, 응용하여 기술발전 및 생활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, 첨단기술의 정보를 교환하여 내일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코자 한다.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지향하는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열정을 가진 젊은이, 연구하고 탐구하는 대학인, 함께 고민하고 땀 흘리는 대학인으로서 작게는 개인적인 성취감, 학교의 명예,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및 산업 발전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본 동아리의 취지라 하겠다.**

**4조 [목적]**

* **신기술 연구 및 신제품 개발에 의한 사회 발전의 추구**
* **발명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발명인의 저변 확대와 풍토조성의 추구**
* **회원 간의 우호와 친목도모 및 타 발명 단체와의 협력 추구**
* **국내외 여러 발명대회 참가를 통한 왕성한 작품활동의 추구함이 본 동아리의 목적이라 하겠다.**

**5조 [회칙] 본 동아리의 회칙에는 아래의 각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**

* **1항 총칙**
* **2항 회원**
* **3항 임원**
* **4항 회의**
* **5항 사업**
* **6항 재정**
* **7항 회칙 개정**
* **8항 기타 필요한 사항**

**제2장 회원**

**1조 [준회원]**

1. **[내용] 숭실대학교 재학생으로서 바람개비에 가입하였으나 정회원으로 인준받지 못한 자이다.**
2. **[의무] 준회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**
   * **일정액의 정기적인 회비를 납입해야 한다.**
   * **일정기간의 교육을 수료함을 원칙으로 한다.**
   * **정회원으로의 판정심사를 받아야 한다.**
   * **아이디어 회의 및 정기총회, 여름발명학교 등의 동아리 행사에 참여해야 한다.**
3. **[심사] 정회원으로의 판정심사를 가리킨다.**

* **회장단이 그 동안의 활동을 토대로 심사한다.**
* **심사기준: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정회원 심사에서 누락된다.**

1. **신입생 교육 무단 불참자(단, 차후 가입자는 소정의 절차를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**
2. **조별 아이디어 회의 및 총 아이디어 회의 불참자(학기 당 가입일로부터 각각 1/2이상) 단, 강의시간과 겹치거나, 경조사는 제외.**
3. **여름발명학교 불참자**
4. **학기당 가입일로부터 정기총회 1/2 이상 불참자**
5. **2학기 가입자: 가입해 기준으로 발명전시회 작품 미 출품자, 2학기 내 공모전 미 참가자(공모전의 주제와 수상실적은 기준에서 제외)**
6. **심사에 통과되면 정회원의 자격이 주어지며 만일 그렇지 못할 시에는 다음 심사를 기다릴 수 있다.**
7. **[가입] 신입생이 아닌 재학생은 동아리에 가입할 수 없다.**
8. **[재가입]**

**제1호) 정회원으로 인준을 받았던 자가 재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총회를 거쳐 2/3 이상이 찬성할 시 다시 정회원으로 받아들인다. (단, 제명되었던 회원은 재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. 재가입 된 회원은 6학기까지 제명 대상자로 활동을 해야 하며 1년 동안 여름발명학교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.)**

**제2호) 준회원인 자가 재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조건들 중 2개 이상을 충족할 시 총회를 거쳐 2/3 이상이 찬성할 시 다시 정회원으로 받아들인다. (단, 제명되었던 회원은 재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. 재가입 된 회원은 6학기까지 제명 대상자로 활동을 해야 하며 1년 동안 여름발명학교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.)**

**[제2호의 조건]**

1. **여름발명학교 주교사 활동**
2. **부장단 활동**
3. **아이디어 회의 조장**
4. **아이디어 회의 부조장**

**2조 [휴학생]**

* **본 동아리의 휴학생은 동아리 내에서의 투표권을 갖지 못한다.**
* **휴학생은 본 동아리의 총회 및 주요 회의에서 발언권을 가지며 이때 나온 안건은 재학생과의 차별을 두지 않고 표결에 부친다.**
* **휴학생은 휴학기간 중에 본 동아리의 주요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**

**3조 [정회원]**

1. **[자격] 정회원 판정 심사를 통과한 자이다. 정회원은 재학중인 사람만 가능하다.**
2. **[의무]**
   * **정기적인 회비를 납입해야 한다.**
   * **동아리 활동(회의, 교육, 사업 등)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.**
   * **아이디어 회의에서의 주요 내용과 바람개비만의 노하우(Know-how)를 함부로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.**
3. **[벌칙] 위의 사항을 이행치 못한 자는 10조에 의거하여 징계한다.**

**4조 [명예회원]**

1. **[자격] 본 동아리의 졸업생과 본 동아리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는 자로서 후자의 추천은 임원이 할 수 있다.**
2. **[의무 및 권리]** 
   * **본 동아리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어야 하며 동아리의 홍보 및 결속에 힘써야 한다.**
   * **졸업 후에 본 동아리의 명예회원으로 추천된 자는 본 동아리의 주요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.**

**5조 [지도교수] 본 동아리는 지도교수를 모시며,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작품의 질을 높이는데 힘쓴다.**

**6조 [회원에 대한 징계]**

1. **본동아리의 주요내용, 노하우(Know-how)를 누설하거나 동아리 참여에 비 적극 적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.**
2. **1학년 1학기의 준회원에 한하여 징계대상에서 제외한다.**
3. **[징계기준]**

* **정회원과 준회원 모두 동일하게 적용한다.**
* **조별 아이디어 회의 및 총 아이디어 회의 및 총회에 각각 1/2 이상 출석해야 한다.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부장단이나 회장단의 합의 하에 징계대상자가 된다. (단, 조별 아이디어 회의 및 총 아이디어 회의와 학교 강의 시간이 같을 경우와 7학기 이상자의 경우에는 제외된다.)**
* **7학기 이상자를 제외하고 총회에 사전 고지 없이 불참했을 시에는 즉시 징계대상자가 된다. (단, 학기 중에 진행되는 임시총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.)**
* **한 학기 이상 회비를 내지 않았을 시에는 징계 대상자가 된다.**
* **동아리 명예를 실추시킨 자는 회의를 거쳐 징계 대상자가 된다.**
* **3학년 2학기 미 수행자는 4학년 1학기에도 3학년에게 준하여 활동을 한다. (모든 활동포함)**
* **4학기까지 정회원 인준을 받지 못한 자는 제명된다. (단, 3학기까지 정회원 인준을 받지 못한 자의 명단은 2학기 개강총회 때 공지한다.)(단, 유예를 원하는 자에 한해서 총회에서 정회원의 2/3이상이 찬성하면 1학기 징계대상자로 유예가 가능하다.)**

1. **[유고 지각/결석]**

* **\*6조 3항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행사의 유고결석/지각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국한하여 인정하되, 세부적인 사유는 회장단이 결정한다.**

1. **병역 의무로 인한 결석**
2. **개인적 경조사에 의한 결석**
3. **각종 대회, 교육, 연수로 인한 결석**
4. **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결석(날짜 변동 가능한 진료는 제외한다.)**
5. **기타 회장단이 인정하는 학내의 행사로 인한 결석**
6. **(제명대상자 및 제명자)**

* **6조 3항 징계내용에 해당되는 정회원은 제명대상자가 된다. 제명대상자는 다음 1학기의 유예기간을 주고, 회장단 및 부장단의 협의 하에 제명할 수 있다. (단, 회 장단이 상화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경우 총회를 통하여 징계의 수위를 변경할 수 있다. 회장단은 판단의 기준을 공개한다.)**
* **6조 3항 징계내용에 해당되는 준회원은 회장단 및 부장단의 협의 하에   
  결정한다.**

1. **(제명대상자 해지)**

* **6조 5항에 명시되어 있는 1학기의 유예기간 동안 다음 중 한 가지 항목을 선택하여 이행한다면 제명대상자를 해지한다**

**가) 여름발명학교 참여**

**나) 부장단 활동**

**다) 조장/부조장 활동**

**제3장 임원**

**1조 [임기] 회장단의 임기는 1년, 부장단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. 단, 회장단 중 고문의 임기는   
6개월로 하며 1회 중임이 가능하다.**

**2조 [선출]**

* **회장단은 연중 2차 총회에서 그 외 임원은 1차 총회에서 각각 선출된다.**
* **회장은 전 회원의 3분의 2이상 출석에서 최다 득표를 얻은 자이다. (단 과반수를 얻지 못했을 때 최다 득표자와 차선자가 결선투표를 한다.)**
* **고문은 전대 고문과 신임 회장단의 합의에 의한다.**
* **총무 이하 임원은 전임 회/부장단들의 논의에 거쳐 선출한다.**
* **부회장은 회장단 선거를 제외하고 재투표로 선출한다.**
* **부장단 선출에 대하여 휴학생은 부장단으로 선임될 수 없다. (단, 다음 학기에 복학**
* **예정자는 부장단으로 선임될 수 있다.)**

**3조 [회장]**

1. **본 동아리의 정회원이여야 하며 본 동아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  
   자여야 한다.**
2. **[의무]일반 회원과 임원들을 총괄 지휘하며 아래 5장의 사업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여야 하며 회원 간의 친목도모 및 동아리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.**
3. **[권한] 회장은 본 동아리의 대표자로서 대내외적으로 본 동아리를 대표하며 그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세부 규칙의 제정, 예산의 심의 결정 및 본 동아리의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.**
4. **회장은 재임 또는 연임이 불가능하다.**

**4조 [회장단]**

1. **회장을 비롯한 부회장, 고문으로 구성되며, 부장단은 회장단을 보좌한다.**
2. **[부회장] 본 동아리의 운영에 있어 행정적인 업무를 집행하고, 부장단을 통솔하여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 유보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.**
3. **[고문]**

* **[자격] 본 동아리의 발전에 뚜렷한 공헌을 한 자로서 어느 한 분야에 대해 일정 수 준의 기술이나 지식을 가져야만 한다.**
* **[의무 및 권한] 고문은 본 동아리 전반에 걸쳐 회장을 보좌하며 동아리 운영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다.**

**5조 [부장단]**

1. **[학술부장] 학술부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(IDEA회의/학술세미나)는 그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 학술부장에게 모든 권한을 일임한다.**
2. **[기획부장] M.T 및 각종 행사 등의 기획에 있어서 기획부장은 회장단과 독립된 고유의 권한을 가진다.**
3. **[홍보부장] 주요 행사의 홍보, 스폰서의 유치에 있어서 홍보부장은 홍보 계획과 그 실행에 있어서 독자적인 권한을 가진다.**
4. **[관리부장] 동아리방에 비치되어 있는 공구들과 동아리방의 관리에 있어서 관리부장 은 공구관리체계의 유지를 위해 기수를 초월한 독립성을 가진다.**
5. **[편집부장] 편집부의 주요 활동기간(교재편찬/홍보물 제작)에 편집부장은 워드 편집 이 가능한 회원을 기수에 무관하게 선별하여 작업에 동원이 가능하다.**
6. **[총무부장] 총무부장은 각종 행사의 예산 집행 시, 각 부서가 제출한 예산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금지원을 거절할 수 있다. 또한, 회비 징수에 있어서는 학번과 기수를 초월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다.**
7. **[정보부장] 정보부장은 동아리에 관련된 정보수집과 유포의 의무를 갖고, 동아리 홈페이지의 관리자로서 독자적인 권한을 가진다.**
8. **부장단은 재임 또는 연임이 가능하다.**
9. **[부장단] 부장단은 각 부에 해당되는 문서를 보관 및 보존을 할 의무를 가지며 작 성하는 모든 문서는 파일화 한다.**

**제4장 회의**

**1조 [정기총회]**

1. **[시기] 연 3회를 원칙으로 하며 그 시기는 학기말 또는 학기초로 한다.**
2. **[내용] 각 학기 결산보고, 다음 학기 사업계획, 임원 선출 등을 내용으로 한다.**
3. **[소집] 정회원의 2/3이상이 출석하여야 이루어지며 시기는 회장단이 결정하여 회의 최소 1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**
4. **[인원] 7학기 이상인 정회원은 출석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. 다만, 7학기 이상인 정회원이 참석했을 경우, 전체 정회원 인원에 포함하여 회의를 시작한다.**

**2조 [임시총회]**

1. **[시기] 동아리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소집할 수 있다.**
2. **[내용] 긴급한 안건에 대해 합의한다.**
3. **[소집] 4학년을 제외한 정회원의 2/3이상이 출석해야 이루어진다. 4학년 정회원이 참여했을 경우, 정회원 참석 인원에 포함한다.**

**3조 [총 아이디어 회의]**

1. **[시기] 월 1회 이상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횟수와 시기는 학술부장이 결정한다. 그리고 총 아이디어 회의 세칙은 학술부장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.**
2. **[내용] 총 아이디어 회의는 본 동아리 사업의 핵심부분 중의 하나이며   
   아이디어 세미나 형식으로 신기술의 정보교환 및 새로운 고안품에 대한 연구를   
   그 내용으로 한다.**

**4조 [조별 아이디어 회의]**

1. **[시기] 학술부장의 주도하에 권한을 위임받은 조장들이 결정 후 주 1회를 목표로   
   실시한다.**
2. **[내용] 조별 아이디어 회의는 본 동아리 사업의 핵심부분 중의 하나이며 아이디어 회의 형식으로 신기술의 정보교환 및 새로운 고안품에 대한 연구를 그 내용으로   
   한다.**

**5조 [학술세미나]**

1. **[시기] 고문과 학술부장이 결정 후 공고한다. (년 1회 이상)**
2. **[내용] 회원의 자질 향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교육 및 기술교육을 그 내용으로 한다.**

**제5장 사업**

**1조 [내용]**

* **발명인의 저변확대와 발명의 풍토 조성**
* **신기술 정보수집 및 교환, 노하우(Know-how)연구**
* **학교지식의 실제 응용과 적용에 노력**
* **회원들의 친목도모 및 경조사에 참여**
* **외부 발명 단체와의 유대관계**
* **공업소유권법의 학습 및 숙지**
* **관계학회 및 전람회의 참여**
* **정기적인 발명 전시회**
* **국내외 발명전에 출품**
* **여름 발명학교 운영**
* **기타 동아리 목적에 필요한 사업**

**2조 [작품전시회]**

1. **[내용] 발명의 저변확대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동아리의 연내 제작한 고안품과   
   연구내용을 교내에서 일정기간 발표한다.**
2. **[시기] 연 1회 발표를 원칙으로 하며, 그 시기는 임원회의를 통해 결정한다.**
3. **[목적] 본 동아리 내 회원들의 발명의욕 고취와 전문성 강화 및 발명의 홍보를   
   목적으로 한다.**

**3조 [발명전 참여]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발명전에 참가하여 회원의 자질 및 수준 향상에 힘쓰고 타 작품 등을 통해 새 기술을 습득하여 나아가 수상할 수 있도록 한다.**

**4조 [발명학교]**

1. **[내용] 하계방학을 이용하여 지방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일정기간동안 발명 및   
   과학 교육을 한다.**
2. **[시기]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결정한다.**

**5조 [신입생 교육]**

1. **[목적] 실질적인, 교육을 통해 발명의 입문부터 산업재산권에 이르기까지의 기본적인 제반지식을 형성하여 아이디어 창작에 구체적인 도움이 되도록 한다.**
2. **[시기] 1학기 개강 후 일정기간으로 한다.**

**제6장 재정**

**1조 [수입] 아래 2조, 3조, 4조를 본 동아리의 수입으로 한다.**

**2조 [회비] 본 동아리의 모든 회원은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**

**3조 [학예술 지원비] 본 동아리에 지원되는 학예술 지원비는 본 동아리의 활동자금으로 한다.**

**4조 [특별수입]**

1. **[기부금] 뜻있는 개인이나 단체와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  
   지원받을 수 있다.**
2. **[입상상금] 대외행사에서 입상하여 상금을 받은 회원은 최대 20만원이하의 범위 내에서 상금의 15%에 해당하는 일정액을 본 동아리에 기부하고 이는 특별회비로 구분되어 회장단이 관리한다. 단, 여기서 대외행사는 특허청 또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의 주최 및 주관 하 행사에 국한하여 인정한다.**
3. **[발명장학금] 발명장학생 선정사업에서 선정되어 장학금을 받은 회원은 최대 5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상금의 15%에 해당하는 일정액을 본 동아리에 기부하고 이는 특별회비로 구분되어 회장단이 관리한다.**
4. **[공업소유권] 특허권 등의 공업소유권을 얻어 상품화에 성공한 회원은 그 일정액을 동아리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한다.**

**5조 [집행]**

1. **[회비]** 
   * **회비의 집행은 본 동아리 행사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다.**
   * **회비사용 근거는 총무가 통장 및 영수증을 통해 장부에 기록 유지한다.**
2. **[특별회비]**
   * **특별회비는 회장의 책임 하에 회장단이 관리한다.**
     + **행사 중 예기치 못한 사고발생시 사용 가능하며, 여름발명학교 및 기타사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다. 단 부득이한 경우 총회를 기본으로 하며 총회의 개최가 불가시 공지를 통한 투표를 통하여 사용여부를 가릴 수 있다.**
     + **동아리 회원의 조사(부모, 형제자매에 한정)또는 경사(동아리 재학생의 결혼)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총회를 거치지 않고 회장단 부장단의 의견일치 하에 사용할 수 있다.**
     + **특별회비의 관리는 회장이 장부와 도장, 부회장이 통장, 고문은 현금카드를 관리하며, 회장은 특별회비의 사용근거를 장부에 기입한다.**

**6조 [결산보고]**

1. **[회비] 총무부장과 기획부장은 정기총회에서 당 학기의 결산보고를 해야 하며, 흑자 잉여분은 다음 회기로 이월된다.**
2. **[특별회비]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당 학기의 결산보고를 해야 하며, 흑자 잉여분은 다음 회기로 이월된다.**

**제7장 동아리 등록**

**1조 [등록] 동아리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숭실대학교 학칙 및 동아리연합회 회칙에 따른다.**

**제8장 부칙**

**1조 [회칙 발효] 본 동아리의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 시 그 순간부터 효력을 발휘한다.**

**2조 [회칙 개정] 본 동아리의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회원의 투표에 의해 개정될 수 있으며 출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이어야 한다.**

**3조 [시행 세칙] 본 동아리의 시행세칙은 임원의 협의 하에 별도로 정한다.**